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 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 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 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재직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교육원 종합훈련단을 직무교육훈련센터로 기구를 변경하여, 기본·전문 교육과정에 관한 사무를 반영하여 전담 운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 하기 위해 분리하여 운영 중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에 통합 운영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추가 도입되는 신형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8명(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9명, 경장 20명, 순경 32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제협력관”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국제협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1호 중 “수립”을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조정”을 “평가”로 한다.

② 국제협력관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14

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제11조 중 “운영지원과·교무과·교수과·종합훈련단”을 “운영지원과·교무과·교수과·직무교육훈련센터”로, “종합훈련단장”을 “직무교육훈련센터장”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직무교육훈련센터)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기본과정·전문과정 교육 훈련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2. 교육훈련 성과의 분석 및 평가

3.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업무

4.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개발 업무

5. 교육생 관리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제34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중 “5퍼센트”를 각각 “7퍼센트”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7 제2호와 같다”를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에 따른 정원배정 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별표 4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80”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88”을 “89”로 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4”를 “5”로 하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 일반직 계 1.0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1.0”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를 삭제한다.

별표 4의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500”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109”를 “110”으로 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을 “7”로 하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 일반직 계 1.0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1.0”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를 삭제한다.

별표 5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206”를 삭제하고, 총계 “207”을 “20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76”을 “171”로 하며, 경위 “44”를 “41”로 하고, 경사 “47”을 “45”로 하며, 일반직 계 “30”을 “31”로 하고, 공업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사서서기 “1”을 “2”로 하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 일반직 계 1.0 공업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사서서기 1.0”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1.0”를 삭제하며, “공업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사서서기 1.0”를 삭제한다.

별표 5의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203”를 삭제하고, 총계 “208”을 “20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76”을 “171”로 하며, 경위 “44”를 “41”로 하고, 경사 “47”을 “45”로 하며, 일반직 계 “31”을 “32”로 하고, 공업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사서서기 “1”을 “2”로 하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 일반직 계 1.0 공업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사서서기 1.0”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1.0”를 삭제하며, “공업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사서서기 1.0”를 삭제한다.

별표 7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10,983”를 삭제하고, 총 계 “10,989”를 “11,06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134”를 “10,206”으로 하며, 경위 “905”를 “908”로 하고, 경사 “1,919”를 “1,921”로 하며, 일반직 계 “849”를 “856”으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55”를 “156”으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2”를 “46”으로 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10”을 “11”로 한다.

별표 7 행정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39”를 “40”으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6.0 일반직 계 6.0 행정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환경서기·사서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0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1.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6.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환경서기·사서서

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1.0”를 삭제한다.

별표 7의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10,997”를 삭제하고, 총계 “11,003”을 “11,07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130”을 “10,202”로 하며, 경위 “898”을 “901”로 하고, 경사 “1,917”을 “1,919”로 하며, 일반직 계 “867”을 “873”으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57”을 “158”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2”를 “46”으로 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19”를 “20”으로 한다.

별표 7의2 행정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44”를 “45”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6.0 일반직 계 6.0 행정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환경서기·사서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0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1.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6.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환경서기·사서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1.0”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획조정관) ① <u>국제협력관</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기획조정관) 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1항에 따라 <u>기획조정관</u>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u>국제협력관</u> 으로 하며, <u>국제협력관</u> -----
<신 설>	② <u>국제협력관</u> 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u>기획조정관</u> 을 보좌한다.
② ~ ⑤ (생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⑥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u>기획조정관</u> 을 보좌한다.	⑦ -----
1. 교육훈련 일반지침 수립	1. -----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과 <u>조정</u> 에 관한 사항	2. ----- <u>평가</u> -----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제11조(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제11조(해양경찰교육원) -----

한다)에 <u>운영지원과 · 교무과 · 교수과 · 종합훈련단</u> 및 학생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 · 교무과장 · 교수과장 및 <u>종합훈련단장</u> 은 총경으로, 학생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 <u>운영지원과 · 교무과 · 교수과 · 직무교육훈련센터</u> -----
제15조(종합훈련단) 종합훈련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u>직무교육훈련센터</u> 는 -----.
1. 해양경찰 훈련의 기획 · 평가 업무 총괄	제15조(직무교육훈련센터)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기본과정·전문과정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해양경찰 훈련 이론 개발 및 훈련 제도개선 사무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3. 연간 훈련계획 수립	2. 교육훈련 성과의 분석 및 평가
4. 지방해양경찰관서의 훈련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업무
5. 지방해양경찰관서의 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 개발 업무
6. 훈련우수함정 선발에 관한 사항	5. 교육생 관리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제34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제34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7퍼센트 -----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20명(5급 1명, 6급 8명, 7급 8명, 9급 3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③ (생략)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1명(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③ (생략)

④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7퍼센트-----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7퍼센트

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18명(7급 2명, 8급 2명, 9급 1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 ⑥ (생략)

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
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경
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
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
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
다) 정원은 별표 7 제2호와 같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원의 운영) ① -----

----- 공
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
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
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
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 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신·구정원대비표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80	<삭제>	
·	·	·	
일반직 계	88	89	+1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4	5	+1
·	·	·	
·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	<삭제>	
일반직 계	1.0	<삭제>	-1.0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	<삭제>	-1.0
--	-----	------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 500	· <삭제>	
· 일반직 계	109	110	+1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	7	+1
·	·	·	
·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	<삭제>	
일반직 계	1.0	<삭제>	-1.0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	<삭제>	-1.0
--	-----	------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해양경찰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07</u>	<u>202</u>	-5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은 제외한다) 계	<u>206</u>	<삭제>	
경찰공무원 계	<u>176</u>	<u>171</u>	-5
·	·	·	
·	·	·	
경위	<u>44</u>	<u>41</u>	-3
경사	<u>47</u>	<u>45</u>	-2
·	·	·	
·	·	·	
일반직 계	<u>30</u>	<u>31</u>	+1
·	·	·	
·	·	·	
공 업 서 기 · 방 재 안 전 서 기 또는 사 서 서 기	<u>1</u>	<u>2</u>	+1
·	·	·	
·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u>1.0</u>	<삭제>	
일반직 계	<u>1.0</u>	<삭제>	-1.0

공 업 서 기 · 방 재 안 전 서 기 또는 사 서 서 기	<u>1.0</u>	<삭제>	<u>-1.0</u>
-------------------------------------	------------	------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해양경찰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08</u>	<u>203</u>	-5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은 제외한다) 계	<u>207</u>	<삭제>	
경찰공무원 계	<u>176</u>	<u>171</u>	-5
·	·	·	
·	·	·	
경위	<u>44</u>	<u>41</u>	-3
경사	<u>47</u>	<u>45</u>	-2
·	·	·	
·	·	·	
일반직 계	<u>31</u>	<u>32</u>	+1
·	·	·	
·	·	·	
공업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사서서기	<u>1</u>	<u>2</u>	+1
·	·	·	
·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u>1.0</u>	<삭제>	-1.0
일반직 계	<u>1.0</u>	<삭제>	-1.0

공업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사서서기	<u>1.0</u>	<삭제>	<u>-1.0</u>
------------------------	------------	------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지방해양경찰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4항 본문 및 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989</u>	<u>11,062</u>	+73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10,983</u>	<삭제>	
경찰공무원 계	<u>10,134</u>	<u>10,206</u>	+72
·	·	·	
·	·	·	
경정	<u>164</u>	<u>165</u>	+1
경감	<u>552</u>	<u>554</u>	+2
경위	<u>905</u>	<u>911</u>	+6
경사	<u>1,919</u>	<u>1,930</u>	+11
경장	<u>2,890</u>	<u>2,910</u>	+20
순경	<u>3,658</u>	<u>3,690</u>	+32
일반직 계	<u>849</u>	<u>856</u>	+7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55</u>	<u>156</u>	+1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42</u>	<u>46</u>	+4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u>10</u>	<u>11</u>	+1
·	·	·	
행정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u>39</u>	<u>40</u>	+1
·	·	·	
·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u>6.0</u>	<삭제>	
일반직 계	<u>6.0</u>	<삭제>	-6.0

행정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 서기·환경서기·사서서기·시 설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0</u>	<삭제>	<u>-1.0</u>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 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 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4.0</u>	<삭제>	<u>-4.0</u>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 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환경 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 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 서기보 또는 순경	<u>1.0</u>	<삭제>	<u>-1.0</u>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지방해양경찰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1,003</u>	<u>11,076</u>	+73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은 제외한다) 계	<u>10,997</u>	<삭제>	
경찰공무원 계	<u>10,130</u>	<u>10,202</u>	+72
·	·	·	
·	·	·	
경정	<u>172</u>	<u>173</u>	+1
경감	<u>551</u>	<u>553</u>	+2
경위	<u>898</u>	<u>904</u>	+6
경사	<u>1,917</u>	<u>1,928</u>	+11
경장	<u>2,888</u>	<u>2,908</u>	+20
순경	<u>3,658</u>	<u>3,690</u>	+32
일반직 계	<u>867</u>	<u>873</u>	+6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 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방 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57</u>	<u>158</u>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 수산서기보 · 보건서기보 · 환경 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42</u>	<u>46</u>	+4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 수산서기보 · 보건서기보 · 환경 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 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 서기보 또는 순경	<u>19</u>	<u>20</u>	+1
·	·	·	
행정서기보 · 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u>44</u>	<u>45</u>	+1
·	·	·	
·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u>6.0</u>	<삭제>	
일반직 계	<u>6.0</u>	<삭제>	-6.0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 서기 · 환경서기 · 사서서기 · 시 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0</u>	<삭제>	-1.0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 수산서기보 · 보건서기보 · 환경 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4.0</u>	<삭제>	-4.0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 수산서기보 · 보건서기보 · 환경 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 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 서기보 또는 순경	<u>1.0</u>	<삭제>	-1.0